

# 建築法과建築士

대체로, 建築에 從事하는 사람, 그 中에서도 設計에 參與하는 建築士들에 대하여 建築法은 정 말로 귀찮은 存在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은, 創造活動의 世界나 造形의 領域에 무엇인가 모르나 염치 없이 侵入하여 이상한 注文을 내놓는다.

농담하지 말자고 까지 생각된다.

하나 하나 그런 注文에 귀를 기울이면, 當初에 構想한 形態나 空間의 이미지가 엉망진창으로 되어 버린다.

法規의 介入을 許容할 수 없다고 無視하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 注文은 絶對的이고, 結局에는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알고서는, 비효소 法規의 存在를 認識하게 된다.

동시에, 그 벽의 두꺼움에 정 말로 원망스럽게 느끼게 된다.

建築士의 建築法과의 마주침은 대개의 경우 이럴 것이다.

그 때부터 法規와의 交際가 시작되어, 점차로 익숙해 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좀체로 만만찮은 相對方이다.

거기에 여러번의 改正으로 그 때마다, 그 要求가 엄하여 진다.

또 한, 建築法만큼 經驗의 知識이 쓸모가 없는 것인지, 적어도 매번 建築計劃마다, 法規의 變化의 有無를 確認하는 것이 必要할 만큼 자주 变한다.

특히, 問題되는 것은 建築計劃途中의 指導에 依한 變化이다.

그 때문에, 經濟上의 損失과 일이 든가, 人格上의 信賴關係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建築士는 建築法에 関係하는 症에 걸려 있을 것이다.

저 難解한 表現과 뒤얽힌 内容으로 建築法라면 질겁을 하게 된다.

이런 것 들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建築士는 建築法에 精通하여야 한다.

그런데 建築士는 어찌해서인가, 建築法에 딱 질색인 것 같고, 지극히 공부를 안하는 것 같다.

이것은 왜 그런가 잠시 생각에 잠겨보면 아래와 같을 것이다.

확실히, 「建築法規」(建築의 計劃, 設計工事を 規制하

고 있는 法規의 類) 自体에는, 다음과 같은 問題點을 들 수 있다.

1. 建築法規에는 建築法, 도시계획법, 消防法, 汚物清掃法……等, 너무나 関係하는 法律이 많다.

또 建築法을 例를 들어도 大統領令(施行令), 部令(施行規則), 또 地方自治法規인 條例, 規則이 있고 해서 全的으로 複雜多端하다.

2. 規定이 法, 施行令, 등 各處에 흩어져 散在하여 있다.

가령 「耐火構造」의 規定은 建築法 第2條 第9号에 大略의 規定이 있고 同施行令에 「耐火性能을 規定하고, 끝으로 「耐火性能의 示方」을 告示로서 定하도록 되여 있다.

3. 法規가 建築士에 대해서 異質의 것이고 바탕에 違和感이 있기 때문인지, 法規에 대해서 아무리 해도 친숙해질 수 없는 傾向이 있다. 法文이 異常하도록 難解한 것도 그 原因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現在의 建築法規에 内在하고 있는 문제를 들쳐내든지, 한탄하여 보는 것은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問題는 全혀 解決되지 않는다.

아무리 귀찮은 存在이라도 設計에 関係하는 것으로서는 絶對無視할 수 없는 것이 建築法規이고 보면, 그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努力を 하여야 한다.

그래서 建築法規에 대하여 더욱 積極的으로 다루는 姿勢가 必要하다.

마침, 온 世上은 컴퓨터의 時代임을 구가하고 있다.

建築法規에 컴퓨터를 導入하여 보면 어떨까 생각된다. 法令의 電算處理이다. 實用化할 수 있을 가는 프로그래밍如何에 달려 있을 것이다.

이 프로그래밍 作成의 第一段階로서 우선 建築 法規의 規定은, 리스트(一覽表)로 만드는 것으로 시작될 것이다.

이윽고, 많은 規定을 収錄한 리스트를 앞에 놓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으로서 研究를 계속할 것으로 하고, 이 리스트에 손질을 加하면, 내일이라도 有効하게 利用될 수 있는 무엇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即, 「建築法規 체크 리스트」, 혹은 「図表로 보는 建築法規集」이 될 수 있다.

建築法規研究者와 建築士中 有志가 제발 이 프로그래밍을 作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린다.